

1997. 9.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등개정조례안
-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 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97. 9. 12	'97. 9. 19	'97. 9. 22	'97. 9. 22	시경과장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 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 중개정조례안	"	"	"	"	기획담당관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연수주택건설지구내 금농동과 연수동의 행정구역선이 아파트, 주차장, 정구장등을 관통하여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2개동의 관할구역에 있으므로
- 입주민의 소유권이전등 민원업무 추진에 혼란이 예상되어 동간 경계를 조정, 원활한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금농동 4필지 3,249㎡ 불 → 연수동으로 편입

나.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동등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체정비 계획에 의거 시보유조례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상호모순되는 내용, 어려운 용어, 오탈자등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관계법령개정에따라상호모순된조례 : 1건
- 오탈자정비대상조례 : 8건
- 어려운용어등현실적용에맞지아니한조례 : 3건
- 법문형식에맞지아니한조례 : 1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읍면등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등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읍면동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1991. 12. 31. 내무부장관승인사항이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되어 그에 따른 본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승인은 충북행정 13120-990호로 '97. 6. 4일 승인되었음.
- 이에 충주연수지구 주택건설사업으로 신속되는 아파트 단지가 2개동으로 분할되어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예상되므로
-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동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동간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호모순된 조례나 오탈자 및 어려운 용어 등 현실적용에 맞지 않는 조례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가 용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혹은 의무를 과하는 사항이 아님.

4. 질의 답변요지

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질 의)

- 행정효과 및 편의상 읍면동관할구역변경대상을 모두 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 답 변

- 각 읍면동에 지시하여 대상지를 조사보고 토록하여 전수조사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일괄조정토록 하겠음.

나.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질 의)

- 개정조문중 범위안에서와 범위내에서는 어떤 의미로 개정코자 하는 것인가?

▷ 답 변

- 범위안에서는 공간적인 의미를 갖는 법률용어이며, 범위내에서는 시간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질 의)

- 정비계획은 상시 계획인가?
- 사실상 사문화되어 폐지대상 조례도 있다고 보는데?

▣ 답 변

- 수시정비하고 있으며 금번에 의회에 제출한 것은, 금년 상반기에 정비한 것이고 다음에는 하반기에 정비해서 연말에 제출할 계획임.
아울러 폐지대상 조례도 정비하겠음.

5. 심사결과

- 가 .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나 .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부 록

- 가 .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나 .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항 다음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충주시 연수동 관할구역에 금능동 일부지역을 별표3과 같이 편입한다.

⑥충주시 금능동의 관할구역중 제5항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 제1조(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7조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30개월이상”을 “30월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개우하지”를 “바꾸지”로 하며, “개우의 필요”를 “소를 바꿀 필요”로 하고, 동조 제4항 단서의 “예산범위내에서”를 “예산범위안에서”로 한다.
- 제2조(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의결하되”를 “의결한다”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중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 제3조(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범위안에서”를 “범위내에서”로 한다.
- 제4조(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동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동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안에서”로 한다.
- 제5조(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안에서”로 한다.
- 제6조(충주시도로점용료의징수조례의 개정) 충주시도로점용료의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중 “그 점용료의” 다음에 “그 점용료의”를 삭제한다.
- 제7조(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제1항”을 “제1호”로 하고, “제2항”을 “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용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삽입한다.
- 제8조(충주시수도급수조례의 개정)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6개월”을 “6월”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3개월이내”를 “3월이내”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항중 “정례일”을 “검침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나목중 “전3개월분”을 “전3월분”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중 “1개월”을 “1월”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중 “2개월”을 “2월”로 한다.

제9조(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의 개정)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독립재산을”을 “독립재산제를”로 한다.

제10조(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11조(충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의 개정) 충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충주시리장신원보증조례의 개정) 충주시리장신원보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원보증서중 “동안의”를 삭제한다.

제13조(충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의 개정) 충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추취업계획”을 “취업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